

대량고용변동 신고

● 신고목적

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·조정,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*이 있는 경우,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**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**(취업알선·전직훈련 등)을 위해 마련된 제도

* 법해석 상 고용상의 대량변동은 대규모 이직(실직)을 의미

● 신고기준 :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

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

-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
-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

● 신고방법

사업주는 **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** 「대량고용변동 신고서」를 작성하여 **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**에 신고

-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

※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

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~300만원의 과태료

● 지원문의

- 부산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: 051-860-2153
- 부산동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: 051-559-6638
-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: 051-309-1575